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3 조 투 자

1. 당사국들은 사업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창설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투자제도의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은 다음을 지향한다.

가.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나. 투자 협력의 강화, 투자의 촉진, 그리고 투자 규칙 및 규정의 투명성 증진. 그리고

다. 투자제도하에서의 보호의 제공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투자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4 조 최혜국 대우

대한민국은 이 기본협정 발효 즉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에 합치하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장 경 제 협 력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1. 당사국들은 상호이익의 기초위에서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수행한다.

- 가. 통관절차
- 나. 무역 및 투자 진흥
- 다. 중소기업
- 라.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 마. 관광
- 바. 과학 및 기술
- 사. 금융서비스
- 아. 정보통신기술
- 자.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 차. 지적 재산
- 카. 환경산업
- 타. 방송
- 파. 건설 기술
- 하.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거. 광업
- 너. 에너지
- 더. 천연자원
- 러. 조선 및 해상 운송. 그리고
- 머. 영화

2.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때에는 상호 합의된 시한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 사업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3. 이러한 협력의 세부사항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다.

제 3.2 조

능력 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능력 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 한다.
2. 당사국들은 빨리 콩코드 II, 투자지역 이니시어티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의 제공을 포함한 비엔티엔 행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3. 당사국들은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는데 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노력을 강화한다.
4. 당사국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인식하면서 다음을 포함한 협력 이니시어티브를 통하여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한다.
 - 가. 메콩 소지역
 - 나. 아에와디-차오 프라야 메콩경제 협력 전략(ACMES)
 - 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성장지대(BIMP-EAGA)
 - 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IMT-GT)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IMS-GT)와 같은 성장 트라이앵글
 - 마. 대 메콩소지역(GMS) 프로그램

- 바. 제2 동서 경제 회랑
- 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 협력(AMBDC)
- 아. 싱가포르-쿠밍 철도 연결(SKRL) 사업. 그리고
- 자. 메콩강 분지 우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 4.1 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포괄적인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데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제 5 장 최종조항

제 5.1 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서비스무역)·제2.3조제3항(투자)·제3장(경제협력)·제4장(그 밖의 분야)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한다.